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8호 2018. 12. 27.(목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27호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328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하동군 조례 제2329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330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하동군 조례 제2331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2332호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하동군 조례 제2333호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하동군 조례 제2334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하동군 조례 제2335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하동군 조례 제2336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하동군 조례 제2337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 하동군 조례 제2338호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하동군 조례 제2339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하동군 조례 제2340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96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4
○ 하동군 규칙 제1197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72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50호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75
----------------	--------------------------------	----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880-2041, 행정2041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196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황순옥)..... 90
○ 하동군 고시 제2018-195호	북천코스모스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 92
○ 하동군 고시 제2018-19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94
○ 하동군 고시 제2018-199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사..... 96
○ 하동군 고시 제2018-20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양진호)..... 97
○ 하동군 고시 제2018-204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98
○ 하동군 고시 제2018-205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사..... 100
○ 하동군 고시 제2018-20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김영주)..... 110
○ 하동군 고시 제2018-20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권성호)..... 111
○ 하동군 고시 제2018-20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이기문)..... 112
○ 하동군 고시 제2018-21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김종대) 11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8-1240호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 114
○ 하동군 공고 제2018-1250호	지방일반임기제(7급상당) 채용 계획..... 121
○ 하동군 공고 제2018-1251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136
○ 하동군 공고 제2018-116호	유기동물 포획관리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51
○ 하동군 공고 제2018-1283호	공시지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158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7 호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 추진) 군수는 주민·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 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하동군의회 의원, 지역 원로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
-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8 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대부신청서

1. 대 부 신 청 금 액 :

2. 대 부 신 청 사 유 :

3. 상환방법 및 기간 :

4.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 업 장 위 치 :

라. 사 업의 필 요 성 :

마. 사 업실시기간 :

바. 재 원 계 획 :

(단위 : 원)

총 사업비	용 자	자 부 담	자 부 담 방 법	비 고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총 수 익	총 비 용	순 수 익	비 고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사업의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남 / 여)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 략)</p> <p>3. <u>군수</u>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p> <p><신 설></p> <p><u>제18조</u> (생 략)</p> <p><u>제19조</u> (생 략)</p>	<p>제2조(자금의 조성)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p> <p><u>제18조(준속기한) 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준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준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u>제19조</u> (현행 제18조와 같음)</p> <p><u>제20조</u> (현행 제19조와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29 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동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충전)대행점” (이하 “대행점” 이라 한다)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점포(무인판매장치 포함) 등을 말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영대행사” (이하 “대행사” 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행점” 을 각각 “대행사 및 대행점”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대행점” 을 “대행사 및 대행점” 으로, “대행점” 을 “대행사 및 대행점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p> <p>2. “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p> <p>3. · 4.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 -.</p> <p>1. “하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p> <p>2. “판매(충전)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점포(무인 판매장치 포함) 등을 말한다.</p> <p>3. · 4. (현행과 같음)</p> <p>5.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p>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3조(발행 및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p>

<신 설>

제14조(할인판매 등 제공) ① (생략)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대행점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16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생략)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

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할인판매 등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행사 및 대행점-----
-----.

③ -----
----- 대
행사 및 대행점-----.

제16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행사 및 대행
점----- 대행사 및 대행
점-----.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0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1 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른 농공단지의”를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계획의 산업단지”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조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조성사업”으로 한다.

제3조 중 “이 회계” 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계획의 산업단지 ----- ----- ----- ----- 특별회계----- ----- ----- -----.</p>
<p>제2조(사업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p>	<p>제2조(사업의 정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조성사업----- -----.</p>
<p>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起債)자금, 분양대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p>	<p>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 -----.</p>
<p>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신 설></p>	<p>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제11조(준속기한) 이 회계의 준속기</p>

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2 호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하동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운영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 를 “읍·면장은” 으로, “운영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관사용” 을 “복지회관 사용”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운영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운영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 나. 착오에 의해 허가되었을 때
-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종합복지회관 사용 정리부

소재지		군		읍·면		리		번지	
건 물	사 용 시 설 명								
	용 도								
	면 적	사 용							
적 요									
허 가 번 호	사 용 목 적	허 가 년 월 일	사 용 월 일 시 간	사 용 료 액	사 용 료 징 수 액		사 용 자		
					금 액	징 수 년 월 일	주 소	성 별	성 명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 2. 사용시설명 :
- 3. 사 용 목 적 :
- 4. 사 용 기 간 :
- 5. 감 면 사 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 ○ 읍·면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 제2조 "을"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읍·면장

(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u>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치 및 규모) ① <u>복지회관</u>은 <u>하동군의 각 읍·면에</u>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u>운영위원회</u>를 둔다.</p> <p>② <u>운영위원회</u>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p> <p>③ (생략)</p> <p>④ 위원은 관내 관계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u>위촉한다</u>.</p>	<p><u>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종합복지회관</u>----- ----- -----.</p> <p>제2조(위치 및 규모) ① <u>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u>--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u>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② <u>위원회</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u></p>

⑤ (생 략)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 8. (생 략)
- 9.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생 략)

제10조(사용료수가) 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 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정해진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수가) ① 읍·면장은

-----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 허가 및 임대 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읍·면장-----

-----.

④ ----- 복지회관 사용 -----

-----.

제17조(손해배상) ① (생 략)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생 략)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① ~

③ (생 략)

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21조(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2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회-----
-----.

제21조(위탁) ① 읍·면장-----

위원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도감독) ① -----

--- 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3 호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10,000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하동군수”를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부자가정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p>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p>	<p>제3조(지원 대상) -----</p>

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제2조 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제3호의 장애인세대, 제4호의 모·부자 가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이하인 자로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하동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

제4조(대상자 선정) -----

 ----- 하동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
군수-----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4 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 ----- ----- -----.</p>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p>	<p>제4조(세출)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u> 2. <u>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u> 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u>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u> 4. <u>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u> 5. (생략) 6. <u>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u> 7. <u>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u>자금의 용도</u> 2. <u>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u> 3. <u>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u> 4. <u>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u>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한 연구 등의 비용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5 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등록회원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이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차량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차량의 운행지역과 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차량 운영을 하거나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9. (생략)</p> <p>10. 그 밖에 <u>군수가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3조(업무 및 기능)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 <u>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 --</p>
<p>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각 호와 같다.</p> <p>1. <u>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u></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 -----.</p> <p>1.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6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u>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등록회원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이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의 차량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u></p> <p>③ <u>차량의 운행지역과 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u></p> <p>④ <u>군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차량운행을 하거나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6 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p> <p>1. (생 략)</p> <p>2. <u>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u> <u>자동차</u></p> <p>3. (생 략)</p> <p>4.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p> <p>-----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7 호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략)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된다.

④ ~ ⑥ (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업무담당과장-----
----- 업무담당주사-----.

④ ~ ⑥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8 호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금”을 “그 비용”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비용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비용의 징수)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23조(비용의 징수)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삭제></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39 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보건소”를 “보건지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진료치료비”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료보험법에 고시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의료보험진료치료비” 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를 “별표 1” 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법정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 <u>건강진단서</u>	1통	500	
2. <u>채용 신체검사서</u>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사체검안서	1통	5,000	
5.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 의함	
6. 사망진단서	1통	500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u>500</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보건소의 ----- ----- -----.</p>
<p>제3조(진료치료비 및 검사 수수료)</p> <p>① 진료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치료비 기준액을 적용한다.</p> <p>② 각종 검사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단, 암 관련 등 검사 및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p>	<p>제3조(진료치료비 및 검사 수수료)</p> <p>①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p> <p>② ----- -----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 -. <단서 삭제></p>
<p>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간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조(약값) ----- ----- 건강보험----- ----- ----- ----- ----- ----- -----.</p>
<p>제5조(타 법령에 따른 치료비)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p>	<p>제5조(타 법령에 따른 치료비) 「의료급여법」 -----</p>

에는 그 법에서 정한 치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치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그 밖의 치료비) 의료보험진료치료비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검사시험 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따라도 가능하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 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에 기재되지 아니

-----.

제6조(그 밖의 치료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

<삭 제>

<삭 제>

한 항목은 별표3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같다.

③ 삭제

④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틀린 글자·탈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한다.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

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② (생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삭제>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 별표 1-----.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생 략)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물 수질검사

4. (생 략)

제15조(검사시험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

(단위 : 원)

(현행과 같음)

② -----

-----.

1. 감염병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근로자건강진단서	1 통	5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 통	500	
3. 일반진단서	1 통	500	
4. 특별진단서	1 통	2,000	요양신청요양, 병 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 통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 통	2,000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 진단서	1 통	2,900	X-선, 간염검사 포함 간염항체 양성자 1,500원
8. 사망진단서	1 통	500	
9.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1 통	500	
10.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 통	300	
11. 1통초과발급	1 통	100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u>건강진단서</u>			(현행과 같음)
2. <u>채용 신체검사서</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사체검안서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위생분야종사자 건강 진단서	1 통		「식품위생 분야 종 사자의 건강진단 규 칙」 제5조(수수료)에 의함
6. 사망진단서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 통	500	
<u><삭 제></u>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40 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농업소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친환경농업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각각 “업무담당과장”으로, 같은 항 중 “친환경농업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u>농업소득과장</u>, 자금출납공무원은 <u>친환경농업담당주사</u>로 한다.</p>	<p>제4조의2(회계공무원의 지정) ----- ----- <u>업무담당과장</u>----- ----- <u>업무담당주사</u>----- -----.</p>
<p>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는 <u>농업소득과장</u>, 관련 읍면장, 관련농업인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운영협의회의 회장은 <u>농업소득과장</u>이 되며, 간사는 <u>친환경농업담당주사</u>가 된다.</p> <p>③ (생 략)</p>	<p>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 ----- <u>업무담당과장</u>----- ----- -----.</p> <p>② ----- <u>업무담당과장</u> ----- <u>업무담당주사</u>----- -----.</p> <p>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18조 (생 략)</p>	<p>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96 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제4조제5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활 기 금 지 원 신 청 서

기 관 명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 별)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
총 사업비	기금신청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	따 로 붙 임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기금대여자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위 사람이 대여받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4호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보증합니다.

20

보증인 성 명 : (인)
 (법인명/대표자명)

생년월일(성별)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연 락 처 :

- 첨 부 : 1.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2. 자본금 5억이상 소명자료 1부.(법인에 한함)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기관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 별)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심의결과	전부지원		일부지원		미지원

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

신 청					심 의 결 정				
계	소요경비재원				계	소요경비재원			
	기금 보조금	자채 부담금	후원금	기타		기금 보조금	자채 부담금	후원금	기타

상환기간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상환조건	이자율	연 2%	연체이자	연 7%
관계규정	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 업 자	(전화 :)			
사 업 장 소	(전화 :)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신 청 금 액	금 원			
신 청 내 역				
총 사 업 비	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			
	기금보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남 / 여) (직인)
 예 금 계 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지원금집행상황

(단위 : 원)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자활기금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법인(단체)명 :

대표(사업)자 : (남 / 여) (인)

-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u>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u>제4조제5호</u> 및 <u>제6호</u>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u>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 -----.</p> <p>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 「<u>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 ----- ----- -----.</p> <p>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 <u>제4조제5호</u>----- ----- ----- -----.</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197 호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감사 대상기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2. 군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u>군</u>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p> <p><u><신 설></u></p> <p>제14조(준용규정) <u>읍면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u></p>	<p>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 -----.</p> <p>제2조의2(감사 대상기관) <u>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 본청,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u> 2. <u>군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u> 3. <u>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u><삭 제></u></p>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훈령 제 350 호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읍면)에서 근로하는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원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무기계약”을 “공무원”으로, “근로자”를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을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읍면”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 를 “공무직 근로자” 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무기계약근로자” 를 “공무직 근로자” 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기계약근로자” 를 “공무직 근로자” 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을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 를 “기간제 근로자” 로, “무기계약” 을 “공무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다” 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 ” 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 ” 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 · 과장” 을 “감사업무 담당관” 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무기계약근로자” 를 “공무직 근로자” 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노동부령” 을 “고용노동부령”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수표(제6조제3항 관련)

(2018. 12. 20. 현재, 단위:명)

구분	총계	현장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사무실무원	청원경찰				
		계	시설물 장비관리	현장 공사등 작업등	현장 지도 단속 감시	그 외 현장 근무				계	시설· 건설 기계 관리	청사 방호	하천 감시	교통 단속
총 계	216	133	18	20	3	92	17	38	24	4	1	2	0	1
본청 소계	164	83	8	20	3	52	17	38	22	4	1	2	0	1
기획 예산 담당관	4	2				2			2	0				
행정과	17	13				13			3	1		1		
경제 전략과	1	1				1				0				
주민 행복과	20	18				18			1	1		1		
재정 관리과	8	3	3						5	0				
문화 체육과	7	6	1			5				1	1			
민원과	5	0							5	0				
환경 보호과	42	3				3		38	1	0				
관광 진흥과	2	2				2				0				
도시 건축과	1	1				1				0				
해양 수산과	1	1				1				0				
안전 총괄과	0	0								0				
산림 녹지과	8	8	2			6				0				
건설 교통과	25	3			3		17		4	1				1
산단 조성과	1	0							1	0				
수도 사업과	22	22	2	20						0				
직속 기관 소계	37	35	0	0	0	35	0	0	2	0	0	0	0	0
보건소	19	19				19				0				
농축산 과	11	10				10			1	0				
농산물 유통과	1	0							1	0				
농촌 진흥과	2	2				2				0				
농업 소득과	4	4				4				0				
읍면 소계	15	15	10	0	0	5	0	0	0	0	0	0	0	0
하동읍	2	2	1			1				0				
화개면	1	1	1							0				
악양면	2	2	1			1				0				
적량면	1	1	1							0				
횡천면	0	0								0				
고전면	0	0								0				
금남면	1	1	1							0				
금성면	2	2	1			1				0				
진교면	3	3	1			2				0				
양보면	1	1	1							0				
북천면	0	0								0				
청암면	1	1	1							0				
옥중면	1	1	1							0				

【별지 제2호 서식】

정수채정 승인서				
종 별				
채용목적				
인원	요 구 인 원			
	승 인 인 원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원)	산 출 기 초
승인조건				
기타사항				
<p style="color: blue;">「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수를 책정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하 동 군 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 하</p>				

[별지 제4호의2서식]

공무직 근로자 전환평가표(제14조의2제2항 관련)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업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능력	업무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 숙지를 통한 담당업무 활용 및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 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 시 가점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당사자인 대표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사자

가. 사용자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나. 근로자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2. 근로조건

가. 취업장소 : (소속부서 :)

나. 직 종 : (담당업무 :)

다. 임 금 :

라. 계약기간 :

마. 근로시간 :

바. 특약사항 :

사. 그 밖에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하동군 무기 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채용근거 :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근로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휴가원(제26조제2항 관련)

결 재	담당자	담당주사	실과소장

소 속 :

성 명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일 간)
사 유	
기타사항 (연락처 등)	

2018년 12월 26일

신청인 : ①

_____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①소 속	②직 종	③성 명

④주 문	
------	--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종	
	④주 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급)	
	④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u></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동군(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군정 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무기계약 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5. "예산부서"라 함은 군 <u>기획조정실</u>을 말한다.</p> <p>6. "사용부서"라 함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u>군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u>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u></p> <p>제1조(목적) ----- -----<u>(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읍면)에서 근로하는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u>----- ----- -----.</p> <p>제2조(정의) ----- -----.</p> <p>1. "공무원 <u>근로자</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u>기획예산담당관</u>-----.</p> <p>6. ----- <u>공무원</u>----- <u>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u>----- <u>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읍면</u>-----.</p>

제6조(정수채정 승인) ①·② (생략)

③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의 직종별 책정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채용) ① ~ ③ (생략)

④ 사용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이 있을 시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춘 근로자 중 군에서 근무기간이 앞선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의2(채용기준) ① 사용부서의장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4조의2(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 인사부서의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사용부서 자체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

제6조(정수채정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공무원직 근로자 -----
-----.

제9조(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무원직 근로자 -----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채용기준) ① -----
----- 공무원직
근로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무원직 근로자로의 전환) ① -----
----- 기간제 근로자-----

----- 공무원직
-----.

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최종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관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5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부서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제5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9조(임금의 종류) ① (생략)

② 5년 이상 근속한 무기계약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무직 근로
자로 전환한다. -----

-----.

제5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
자 징계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

-- 감사업무 담당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임금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직 근로자-----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기본
급(노임단가×그달 중 실근무일
수)의 10를 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
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
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7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 고용노동부령 -----

-----.

② (현행과 같음)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 - 196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407(북천면 서항리 472-3)		
성명(법인명)	황순옥		
범 인 번 호	571107-		
하 천 명 칭	근양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북천면 화정리 580 (북천면 화정리 579-1)		
점 용 면 적	295㎡		
점 용 목 적	농기계 적치(기타 목적)		
최 초 허 가 일	2018년 12월 11일		
점 용 기 간	2018. 12. ~ 2023. 12.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 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8 - 195호

북천코스모스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규정에 의하여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하 동 군 수

1. 사업목적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2. 사 업 명 :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3.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옥정리, 사평리 방화리 일원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이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 이병주문학공원정비사업
 - 뚝방길 정비사업
 - 북천역 주변정비 - 광장 및 주차장 조성
 - 커뮤니티센터 - 커뮤니티센터 조성 (A = 638.94m²)
 - 지역소득증대
 - 한우판매장 - 한우판매장조성 (A = 120.96m²)
 - 지역경관개선
 - 코스모스경관테마 - 폐열차 리모델링 3량 및 조경 등
 - 코스모스공동예술 - 북천역 복원
 - S/W(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5. 총사업비 : 7,250,000천원(국비4,900,000천원, 지방비2,350,000천원)

6. 사업예정기간 : 2012년 05월 ~ 2019년 12월

7. 용지매수 조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비 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총면적	편입면적	
하동	북천	직전	586	2	답	231	231	
			588	14	대	53	53	
			588	15	답	325	325	
			572	2	철	174	174	
			573		철	258	258	
			586	1	철	1,048	1,048	
			588	9	철	414	414	
			588	13	철	27	27	
			588	16	철	364	364	
			586	3	철	4,563	4,563	
			1477	2	철	468	468	
			588	7	철	231	231	
			588	8	대	130	130	
			588	11	철	40	40	
			588	12	철	17	17	
			571	1	철	1,588	1,060	
			574	1	철	975	137	
			573	2	철	903	76	
			571	2	철	208	140	
			571	3	도	142	142	
			572	4	도	81	81	
			576	1	철	1,049	45	
			576	4	도	32	32	
			498	1	철	2,783	40	
		571	5	철	61	61		
		574	4	철	137	137		
		573	3	철	76	76		
		570		대	13	13		
		옥정	440	1	철	474	474	
계						16,865	10,857	

8.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055-880-5141), 하동군 건설교통과 (☎055-880-2516)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8 - 197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56-6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2.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68-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56-6	20181 212		20090 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3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514-8	20181 212		20140 70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334-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구노량길 72	20181 212		20080 402	구노량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701-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재길 316-15	20181 212		20090 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 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228-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02-9	20181 212		20070 618	신흥이라는 법정리명을 도 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하성길 46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하성길 46-1	20181 212		20080 402	하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932-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46	20181 212		20070 618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 영	

하동군 고시 제2018-199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하 동 군 수

■ 지적삼각보조점 수정(세계측지계 좌표값 설정)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도	경도	표고		X	Y				
삼각 보조점	보3	진교면 백련리 182-7	35-01-49.3809	127-53-10.3735	18.884	중부	270824.689	280872.126	2018.08.3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70516.40	280797.93				지역

■ 지적도근점 수정(세계측지계 좌표값 설정)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관측 (설치) 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도	경도	표고		X	Y				
지적도근점	647	고전면 전도리 580-9	34-59-56.7074	127-47-28.2025	14.823	중부	267279.441	272225.816	2018.08.31.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6971.88	272151.72				지역
지적도근점	648	고전면 전도리 580-6	35-00-03.8056	127-47-24.4698	21.729	중부	267497.444	272129.427	2018.08.31.	맨홀식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167190.08	272055.80				지역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00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양 진 호	생년월일(성별) 1972. 08. 05
	전화번호 055-4858-6944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720805-1*****
	주 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23-8	

장소

점용 : 옥종면 법대리 750(구) 인근 : 옥종면 법대리 산 78-10(임)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8.0㎡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2 ~ 2023.12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하 동 군 수 (인)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18-204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경상남도 하동군수

I.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을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하동군 재정관리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⑥ 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 ① 용어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 2018 - 205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위성측량설치)

기준점 번 호	토지 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3131	하동읍 신기리 6-10	35-03-21.355 2	127-46-45.772 1	3.544	중부	273577.81	271100.58	2018.11.15	표철	세계
		35-03-10.242 6	127-46-43.069 9			173269.59	271026.32			지역
3132	하동읍 신기리 6-98	35-03-19.847 7	127-46-50.651 4	3.661	중부	273532.32	271224.60	2018.11.15	표철	세계
		35-03-08.735 0	127-46-47.949 7			173224.1	271150.34			지역
3133	하동읍 신기리 6-55	35-03-16.066 4	127-46-49.558 2	3.487	중부	273415.57	271197.80	2018.11.15	표철	세계
		35-03-04.953 2	127-46-46.856 5			173107.35	271123.55			지역
3134	하동읍 신기리 7-1	35-03-16.283 5	127-46-44.218 5	3.058	중부	273421.20	271062.43	2018.11.15	표철	세계
		35-03-05.170 3	127-46-41.516 3			173112.98	270988.18			지역
3135	하동읍 신기리 9-87	35-03-12.089 1	127-46-48.678 6	3.302	중부	273292.82	271176.47	2018.11.15	표철	세계
		35-03-00.975 5	127-46-45.977 0			172984.6	271102.22			지역
3136	하동읍 신기리 80-2	35-03-06.974 0	127-46-41.577 5	6.541	중부	273133.78	270997.74	2018.11.15	표철	세계
		35-02-55.859 8	127-46-38.875 3			172825.56	270923.49			지역

■ 지적도근점(복구)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679	고전면 범아리216-4	중부	169222.86	274587.61	1995.07.13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40	고전면 고하리149-2	중부	169530.68	276562.52	2005.07.19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929	진교면 양포리 987	중부	166750.81	283342.77	1998.06.18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937	진교면 양포리 989	중부	166904.97	283068.18	1998.06.18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939	진교면 양포리 984	중부	166886.17	283191.51	1998.06.18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095	진교면 백련리 69-4	중부	170412.61	281335.59	2000.05.15	표석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097	진교면 백련리 1-5	중부	170349.20	281514.19	2000.05.1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769	진교면 고통리 350-1	중부	168943.90	282297.82	2005.1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783	진교면 양포리 389-1	중부	167574.77	281977.76	2005.1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53	고전면 전도리 332-2	중부	166697.89	272545.35	2007.10.1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59	고전면 전도리 1293-4	중부	166823.20	273322.92	2007.10.10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63	고전면 대덕리 516-1	중부	167144.70	273787.15	2007.10.1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64	고전면 대덕리 518	중부	167223.19	273862.09	2007.10.1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87	진교면 백련리 792	중부	170571.73	278684.17	2008.11.1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88	진교면 백련리 788	중부	170503.47	278792.89	2008.11.14	표석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90	진교면 백련리 788	중부	170363.81	279123.68	2006.03.0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72	진교면 술상리 11-1	중부	165448.99	283563.54	2009.11.1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77	진교면 술상리 235-3	중부	166039.23	283445.36	2009.11.11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44	하동읍 비파리 889	중부	175003.71	268885.21	2001.12.06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 지적삼각보조점(망실)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삼각 보조점	보1	양보면 지례리 1003	중부	171527.88	278438.38	2006.02.13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2	진교면 백련리 744	중부	170717.40	278203.61	2006.02.13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5	황천면 황천리 1042-2	중부	179912.89	274058.40	2005.10.2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9	청암면 상이리 1938-2	중부	189034.33	271090.82	2002.07.1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11	옥중면 문암리 633	중부	190077.87	280151.51	2004.08.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12	옥중면 문암리 산21	중부	190191.92	280275.76	2004.08.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41	화개면 부춘리 730	중부	185270.69	260551.00	2012.09.2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64	고전면 명교리 산1	중부	171212.79	277621.49	2013.10.29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삼각 보조점	보76	양보면 감당리 1158	중부	175397.74	275838.65	2016.01.09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 지적도근점(망실)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15	하동읍 두곡리 610	중부	175504.98	267355.43	2003.03.2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6	하동읍 읍내리 1559	중부	174985.71	267858.11	2002.10.29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92	하동읍 흥룡리 1323	중부	179632.08	263640.33	2004.12.20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94	하동읍 화심리 986-2	중부	177075.99	265173.17	2002.10.29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96	하동읍 화심리 1016-3	중부	177143.90	265300.35	2002.10.29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97	하동읍 화심리 1016-4	중부	177137.83	265318.40	2002.10.29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0	하동읍 흥룡리 1784	중부	180646.02	263445.42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1	하동읍 흥룡리 1647-1	중부	180399.21	263503.90	2003.03.25.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2	하동읍 흥룡리 1725-1	중부	180283.13	263503.90	2003.03.25	표석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3	하동읍 흥룡리 1604-1	중부	180167.00	263515.70	2003.03.2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4	하동읍 흥룡리 1730-1	중부	180038.20	263488.39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5	하동읍 흥룡리 1483-2	중부	179959.77	263464.82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2	하동읍 화심리 1637-2	중부	177551.61	264683.86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3	하동읍 화심리 1392-3	중부	177669.52	264576.37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4	하동읍 화심리 1695	중부	177802.90	264481.61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5	하동읍 화심리 1709-5	중부	177957.20	264386.73	2003.03.25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6	하동읍 흥룡리 985-4	중부	178041.27	264317.62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7	하동읍 흥룡리 1768	중부	178222.02	264069.44	2003.03.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57	하동읍 비파리 611-66	중부	175080.31	268925.53	2001.10.09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59	하동읍 목도리 567-1	중부	172036.84	271425.94	2000.05.0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3	하동읍 신기리 145-8	중부	173652.34	270126.87	1996.11.12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7	하동읍 신기리 147-5	중부	173702.29	270307.21	1998.10.2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951	하동읍 읍내리 322-24	중부	174855.46	268313.69	2007.01.03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49	하동읍 화심리 104-2	중부	176100.73	266149.31	2007.02.12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50	하동읍 화심리 106	중부	176201.76	266059.46	2007.02.12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62	하동읍 흥룡리 1769	중부	178088.67	264259.52	2007.02.12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2066	하동읍 흥룡리 1140-7	중부	178536.30	263749.16	2007.02.12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68	하동읍 흥룡리 1208	중부	178921.27	263729.16	2007.0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70	하동읍 흥룡리 1173-3	중부	179194.89	263490.92	2007.0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71	하동읍 흥룡리 1308-1	중부	179347.83	263497.23	2007.0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72	하동읍 흥룡리 1779	중부	179494.31	263505.05	2007.0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73	하동읍 흥룡리 1741-5	중부	179619.62	263509.01	2007.0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75	하동읍 흥룡리 1775	중부	179875.47	263465.95	2007.0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76	하동읍 흥룡리 1775	중부	180086.87	263512.76	2009.02.1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52	하동읍 목도리 312-36	중부	171450.69	270609.47	2008.08.21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677	고전면 범아리 1088-2	중부	168764.21	274612.93	1997.07.13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686	고전면 명교리 182-7	중부	170585.14	277551.39	2002.08.29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698	고전면 성천리 1019-3	중부	171463.58	274337.17	2001.06.22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02	고전면 성천리 672	중부	170983.17	274884.06	2001.06.22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22	고전면 고하리 1020	중부	171160.12	276533.00	1997.06.03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28	고전면 신월리 508-2	중부	171200.81	272125.77	2005.07.13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30	고전면 신월리 545-1	중부	171289.65	272045.08	2005.07.13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41	고전면 고하리 132-3	중부	169590.87	276623.15	2005.06.20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43	고전면 성평리 411	중부	169597.14	276362.21	2005.06.2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49	고전면 범아리 299-1	중부	169876.29	274657.33	1998.10.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59	고전면 범아리 989-3	중부	168535.18	272682.42	2001.05.3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51	고전면 전도리 334-2	중부	166849.85	272646.78	2007.10.1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2160	고전면 전도리 227-12	중부	166928.32	273459.30	2007.10.1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703	고전면 성평리 산10-2	중부	168723.12	277411.03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3012	고전면 명교리 212-1	중부	170791.53	277881.57	2013.11.08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68	금남면 덕천리 1005	중부	165936.52	275621.58	2002.11.2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71	금남면 덕천리 1060-6	중부	165739.27	275966.68	2002.11.2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72	금남면 덕천리 1073-2	중부	165652.34	276104.99	2002.11.2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91	금남면 송문리 765	중부	161737.99	278282.30	1998.01.14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799	금남면 증평리 329	중부	165722.37	282250.90	1998.05.30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08	금남면 대송리 970	중부	163453.04	277384.14	2005.08.31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15	금남면 대송리 719	중부	163018.07	276713.69	1990.07.20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28	금남면 계천리 746	중부	166998.26	274229.49	1997.10.0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37	금남면 진정리 산172	중부	166437.28	275128.33	2002.11.21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40	금남면 덕천리 산112-3	중부	166132.30	275355.20	2002.11.2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41	금남면 덕천리 1076-2	중부	165625.03	276288.93	2005.08.3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865	금남면 계천리 741-3	중부	167279.55	274876.44	2002.07.27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866	금남면 진정리 1339	중부	164069.81	275869.37	1996.10.0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867	금남면 진정리 1339	중부	164032.72	275766.18	1996.10.0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868	금남면 진정리 1277-1	중부	163869.33	275907.90	1996.10.0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870	금남면 대송리 산68-27	중부	164500.99	276654.85	1998.04.1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874	금남면 대송리 313	중부	165055.51	277287.44	1990.07.20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875	금남면 대송리 313	중부	164153.44	277357.26	1990.07.20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2138	금남면 진정리 1106-1	중부	165156.90	274004.26	2007.10.0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45	금남면 진정리 821	중부	165598.77	274588.54	2007.10.0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214	금남면 송문리 103-3	중부	163559.92	277738.28	1998.04.1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215	금남면 송문리 산18-1	중부	163457.19	277821.22	1998.04.1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251	금남면 노량리 827	중부	161456.52	280171.51	2008.01.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85	금남면 노량리 산6-25	중부	162640.13	280536.25	2004.05.18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96	금남면 대도리 208	중부	159894.68	276151.63	2001.05.10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503	금남면 대치리 683-1	중부	164149.91	280794.95	2010.05.11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62	금남면 계천리 670	중부	165740.23	273265.79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69	금남면 계천리 334	중부	166508.02	273961.59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70	금남면 계천리 357-2	중부	166653.30	274011.65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76	금남면 계천리 196-2	중부	167071.74	274372.87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84	금남면 덕천리 1487-2	중부	167623.59	274926.27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88	금남면 덕천리 361-1	중부	167565.17	275615.31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842	금남면 대치리 189-2	중부	164301.80	281266.29	2005.07.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843	금남면 계천리 184-3	중부	164363.54	281339.94	2005.07.07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889	금남면 대도리 201-6	중부	159247.64	276184.06	2001.05.10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992	금남면 대송리 산5-3	중부	164847.08	279215.29	2013.11.0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993	금남면 대치리 산58	중부	164771.43	279253.68	2013.11.0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3020	금남면 진정리 282-1	중부	164327.42	275748.84	2014.06.1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3021	금남면 진정리 1341	중부	164069.91	275836.93	2014.06.1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3022	금남면 진정리 1277-1	중부	163868.75	275907.99	2014.06.16	표석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51	북천면 방화리 492-2	중부	179650.16	277122.03	2001.05.0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52	북천면 방화리 479-3	중부	179535.09	277056.94	2001.05.02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55	북천면 화정리 1266	중부	182358.83	279423.14	1991.06.1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57	북천면 화정리 1561-5	중부	183142.31	277995.22	1991.06.1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60	북천면 직전리 1398	중부	179555.24	280713.11	2004.04.19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67	북천면 직전리 1403	중부	179619.53	280828.15	2004.04.19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84	북천면 옥정리 926-1	중부	179809.80	282396.34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86	북천면 옥정리 929	중부	179922.89	282105.10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87	북천면 옥정리 929	중부	179957.60	281972.31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88	북천면 옥정리 929	중부	179985.50	281873.74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89	북천면 옥정리 929	중부	180023.70	281721.00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99	북천면 직전리 1398	중부	179555.01	280713.06	2005.11.04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09	북천면 직전리 1052	중부	179244.08	279630.84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13	북천면 직전리 산133-1	중부	179281.76	279182.46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15	북천면 사평리 1219	중부	179282.06	278903.10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20	북천면 사평리 468-1	중부	179442.69	278195.37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21	북천면 사평리 463	중부	179476.53	278004.55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22	북천면 사평리 산105-1	중부	179529.92	277889.87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26	북천면 방화리 588-1	중부	179575.32	277257.27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27	북천면 방화리 479-3	중부	179535.30	277057.01	2005.11.04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2297	북천면 화정리 산341-2	중부	182230.08	278668.34	2008.06.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13	북천면 서황리 56-1	중부	180985.73	280572.97	2008.06.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14	북천면 서황리 294-2	중부	181139.02	280403.67	2008.06.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40	북천면 화정리 899	중부	182230.31	279563.56	2008.06.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43	북천면 화정리 1080	중부	182205.61	279118.29	2008.06.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52	북천면 직전리 1499-1	중부	179447.52	280637.48	2009.07.23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53	북천면 직전리 744	중부	179425.94	280869.13	2009.07.23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58	북천면 직전리 586-3	중부	179729.08	281334.15	2009.07.23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575	금성면 공항리 914-3	중부	165448.63	272968.52	1996.04.2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576	금성면 공항리 1335	중부	165308.42	273017.95	1996.04.2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584	금성면 갈사리 872-11	중부	161335.44	271502.41	2000.09.1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05	금성면 가덕리 197-10	중부	162891.57	274442.44	1994.09.13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11	금성면 가덕리 1634	중부	162437.64	274221.33	1996.01.13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17	금성면 가덕리 310-7	중부	161866.07	275189.12	1998.09.1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18	금성면 가덕리 310-1007	중부	161632.39	275289.56	1998.09.1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23	금성면 가덕리 310-1007	중부	161035.17	274920.99	1998.09.1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24	금성면 가덕리 310-5	중부	161192.84	274745.59	1998.09.1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33	금성면 공항리 1501	중부	163363.29	272786.35	2000.08.0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34	금성면 공항리 1500	중부	163348.42	272674.70	2000.08.08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43	금성면 고포리 430-4	중부	163659.11	270520.39	2005.11.0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56	금성면 고포리 496	중부	163352.91	270948.05	2005.11.0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1750	금성면 고포리 543-130	중부	163258.20	270759.21	2005.11.08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966	금성면 가덕리 69	중부	164068.06	274176.70	2006.12.01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993	금성면 갈사리 139-2	중부	160850.08	271352.85	2006.12.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995	금성면 갈사리 142-29	중부	160456.64	271706.24	2006.12.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996	금성면 갈사리 142-27	중부	160512.31	271783.15	2006.12.0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087	금성면 갈사리 872-10	중부	161343.40	271498.13	2007.05.2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27	금성면 가덕리 1634	중부	162805.68	273655.04	2008.05.02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39	금성면 갈사리 928-82	중부	162495.55	270914.14	2010.11.25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41	금성면 갈사리 924-98	중부	162738.33	271132.34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56	금성면 궁항리 116-2	중부	165179.24	272703.49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659	금성면 궁항리 126	중부	165461.53	272927.40	2010.11.26	기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3028	금성면 가덕리 298-10	중부	162552.53	276184.23	2014.06.16	철재	하동군청 민원과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07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김 영 주	생년월일(성별) 1962.03.08.
	전화번호 010-3156-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20308-1
	주 소 경남 하동군 공설운동장로 549-1	

장소

점용 : 고전면 신월리 1468(구) 인근 : 고전면 신월리 479(목)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9m²

(또는

m³)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2 ~ 2023.12

점용 · 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0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권 성 호	생년월일(성별) 1953.06.01
	전화번호 010-3573-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30601-1
	주 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73-5	

장소

점용 : 옥종면 법대리 689-41(구) 인근 : 옥종면 법대리 601-9(목)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2m²

(또는

m³)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2 ~ 2023.12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이 기 문	생년월일(성별) 1953.05.24.
	전화번호 010-3588-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20308-1
	주 소 경남 하동군 북천면 중촌길 61	

장소

점용 : 북천면 서황리 1357(구) 인근 : 북천면 서황리 983(목)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30m²

(또는 m³)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2 ~ 2023.12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2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김 종 대	생년월일(성별) 1961. 11. 29.
	전화번호 010-385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11129-1
	주 소 경남 하동군 양보면 구청길 73-1	

장소

점용 : 진교면 백련리 765-6(구) 인근 : 진교면 백련리 156-3(목)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8m²

(또는

m³)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12 ~ 2023.12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공고 제2018 - 1240 호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채용 공고

하동군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전담할 사무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2일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 채용분야 :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 나. 주근무지 : 하동군 적량면 소재 사업 지구 내
- 다. 채용인원 : 1명
- 라. 보 수 : 월 160만원
- 라. 채용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마. 근무시간 : 주5일(8시간/일)

2. 담당업무

추진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가. 추진위원회(또는 법인)의 관련 업무 전반 지원

- 1) 법인결성관련 등 추진 업무
- 2) 추진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각종 회의관련 업무

나.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 할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업무 전반 지원

다.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기관 등 관련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라. 추진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 보조

- 1)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소그룹 단위로 조직화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등

2)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마. 기타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

3. 채용선정 기준

가. 채용대상자는 적량면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마을 주민간
원만한 관계유지가 가능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농촌지역 개발과 관련 업무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은 자

나.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서 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및 마을 운영 계획서상 원활하게 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한자(다만, 영농, 자영업은 겸직 가능)

※ 단,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연령이 낮은 지원자, 농과계(대)학교
졸업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지원마을 추진위원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위원과 사무장 직책은 겸임이
불가함.

4. 채용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2. 13(목) ~ 21. (금)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 09:00 ~ 18:00)

나. 채용신청서

○ 채용신청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는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다. 접수장소 : 경남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 가능

5. 제출서류

가. 사무장 채용신청서 1부(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함께 제출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퇴학, 수료 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한 사항(누락, 허위 기재)이 있을 때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6.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선정기준 및 서류구비 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합격 결정
다.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2. 21(금)(개별통지)
- 2차(면접시험) : 2018. 12. 26(수) 10:00 ~ (하동군청 별관 재난상황실)
 -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하동군청에 도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2. 28(금) 개별통지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김영남, ☎055-880-2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적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채용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 력(전공)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사업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채용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직무수행계획서1부. 끝.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2018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사업 : 채용희망 사업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
로 상세히 기재

※ 년, 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
함하여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2>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사 무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위임받은업무	
③직무수행계획	

작 성 일 : 2018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작성요령

- ① 사무장 : 사무장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② 위임받은 업무 :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임받기로 한 업무내용을 기재
- ③ 직무수행계획 : 직무수행 방법,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첨3>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추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추천사유	※ 추천대상자의 특이사항 또는 강점 등을 적어 능력 검정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기타사항	

이상과 같이 적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채용에 있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추천일 : 2018년 월 일

추천인 : (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공고)

- ▶ 7급상당(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인력)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250호

2018년 제7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4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예정부서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인력	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2년	문화체육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보수정비 - 국정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수행 - 칠불사 아자방지 국가문화재 승격지정,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유물보존처리, 기념관 건립, 동상건립 등)등 현안사업 추진 - 지리산 유람기 문화콘텐츠, 지리산과 섬진강 세계유산 지정 추진 - 하동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하는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 등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필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인력 (일반임기제 -7급상당)	1. 학사학위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또는 박물관 학예연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민속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박물관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미술사학 ▶ 직무분야 : 문화재 보존관리,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지역문화 조사연구 관련 분야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	58,936천원	41,859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8. 12. 14(금)	'18. 12. 14 ~ '18. 12. 24	서류전형	-	'18. 12. 26
		면접시험	'18. 12. 28	'18. 12. 31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12. 14 ~ 12. 24/ 10일간
-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이상 7,000원)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이상 - 7,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문화체육과(☎ 055-880-2367)

- ※ 별지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 (원 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7급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응시번호		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7급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		
2018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2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3. 우대사항				
경 력	근무기관	채직기간	주요 추진 사항	직위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	검정기관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60%;">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30%; text-align: center;"> <tr><td colspan="2">발 급 자</td></tr> <tr><td>소 속</td><td></td></tr> <tr><td>직 위</td><td></td></tr> <tr><td>성 명</td><td>㉠</td></tr> </table> </div>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일반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8. . .

작성자 성명 : ○ ○ ○ (서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공고)

-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251호

2018년 제1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4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예정부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0명	2년	보건소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무분야	인원 (명)	직급	직무내용	비고
간호사	5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예방관리사업 · 쉼터(상시운영)운영사업 · 치매가족지원사업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 · 치매안심마을운영사업 ·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주35시간 (주5일) 09:00~17:00
작업 치료사	2			
사회 복지사	2			
임상 심리사	1			

※ 임상심리사 미 응시할 경우 간호사로 대체

3. 근거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종별	채용 분야별 면허(자격)조건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 제2조의 2,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작업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 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상 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보건, 민간기관 등에서 치매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보수 수준

※ 산출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준용

※ 기본 급 :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45,527천원)을 기준, 업무성격을 감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업무성격 : 상한액의 50%적용

└ 근무시간 : 87.5%적용(주35시간 근무)

$45,527\text{천원} \times 50\%(\text{업무성격}) \times 35/40 = 19,918,000\text{천원}$

【연기본급 19,918,000원/월기본급1,659,83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8. 12. 14(금)	'18. 12. 14 ~ '18. 12. 24	서류전형	-	'18. 12. 26
		면접시험	'18. 12. 28	'18. 12. 31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12. 14 ~ 12. 24/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이하 5,000원)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이상 - 7,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보 건 소(☎ 055-880-6602)

- ※ 별지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한자)	
주민등록번호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18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2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3. 우대사항				
경 력	근무기관	재직기간	주요 추진 사항	직위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	검정기관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8. . .

작성자 성명 : ○ ○ ○ (서명)

유기동물 포획관리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안)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유기동물포획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2월 일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기준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9조의2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근무처	비고
유기동물포획 관리 기간제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동물 포획업무 ◦ 유기동물보호소 및 동물보호 시스템 관리 ◦ 기타 가축위생 당면업무 처리보조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3. 응시자격

가. 접수일 현재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있지 아니하며 상시근무자 가능한자(겸직불가)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라. 자격요건 : 각 호의 하나이상 해당되는 자

1)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2) 업무 내용과 관련 신체적 결함이 없을 것

3) 2018. 12. 20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서류전형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채용인원을 초과한 경우 면접 별도 실시

4.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근 무 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다. 계약기간 : 2019. 1월 ~ 2019. 11월(예정)

라. 보 수 : 하동군수가 정한 금액

※ 임금 73,090원(2019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마. 근로시간 : 주5일/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채용방법

- 제1차 심사 : 서류심사
- 제2차 심사 : 면접시험

나. 채용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8. 12. 28(금) - 전화통보
- 면접 일시 : 2018. 12. 31(월) - 농업기술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12. 31(월) - 전화통보

※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원서접수 일정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비고
2018.12.20 09:00 ~ 2018.12.27 18:00	2018.12.28(금) [개별통보]	2018.12.31(월)	2018.12.31(월) [개별통보]	

○ 원서 접수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 담당

※ 원서접수방법 : 방문접수이며 토, 일요일은 접수 가능.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 력 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2매 이내)

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초본의 경우 주소이력 전체 발급 제출

마.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880-2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 ③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이 력 서

구분	응시 분야
내용	유기동물 포획관리

	성 명	(한문)		
	주민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양력)	
	주 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E-MAIL		
	핸 드 폰	결혼유무	미혼/ 기혼	
	가족사항	남 녀 중	주거사항	동거/비 동거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소재지
					졸업/재학	
						졸업/재학/휴학
					졸업/재학/휴학	

경 력	근 무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비 고
	. . ~ .				
	. . ~ .				
	. . ~ .				

신 체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병 역	구분	병과	계급	소속부대
	cm	kg	좌: 우:	형		필 / 면제			
						복무기간	년 월 ~ 년 월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연령	근무처	직위	동거	외 국 어	언 어	능 력	
								영 어	상 중 하	
									공인시험	점 수

O A 능 력		상 중 하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종 류	등급
		상 중 하		. .		
		상 중 하		. .		
		상 중 하		. .		

자 기 소 개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작성

하동군 공고 제2018 - 1283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하동군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거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8. 12. 20.
- 제공받은 자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제공목적 :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 성명, 주소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소유자의 의견청취 우편발송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8. 12. 20. ~ 2019. 1. 4.(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8. 12. 20.

하 동 군 수